

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(도봉)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8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6월 8일
발 의 자 : 김용석(도봉) 의원(1명)
찬 성 자 : 서윤기·박진형·박기열
유광상·최관술·유동균
김창원·이순자·문영민 의원
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, 2014.11.19.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행정자치부장관’에서 ‘인사혁신처장’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타 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인사혁신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